

##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정	2010. 1. 12	조례	제1069호
일부개정	2012. 12. 11	조례	제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3. 12. 11	조례	제1339호
일부개정	2015. 1. 9	조례	제1422호
일부개정	2015. 12. 15	조례	제1532호
일부개정	2017. 10. 2	조례	제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7. 12. 11	조례	제1736호(구 및 읍·면·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)
일부개정	2019. 5. 9	조례	제1923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	2020. 11. 9	조례	제2079호(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)
일부개정	2021. 12. 31	조례	제224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립장사시설 유치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,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5. 1. 9, 2017. 12. 11, 2019. 5. 9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5. 1. 9, 2017. 12. 11, 2019. 5. 9>

- “시립장사시설”이란 이동읍 평온의숲로 77 일원에 위치한 용인평온의숲 안에 있는 화장시설·봉안시설·자연장지 및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2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.
- “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”이란 어비2리, 묘봉4개리, 어비2리와 묘봉4개리를 포함한 이동읍을 말한다.
- “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”이란 어비2리, 묘봉4개리, 어비2리와 묘봉4개리를 포함한 이동읍 주민을 말한다.

[제목개정 2019. 5. 9]

제3조(주민지원기금의 설치)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(이하 “주민지원기금”이라 한다)은 특성화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

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7. 12. 11, 2019. 5. 9>

1. 어비2리 : 어비2리 주민지원기금
2. 이동읍 : 이동읍 주민지원기금
3. 묘봉4개리 : 묘봉4개리 주민지원기금

제4조(주민지원기금의 조성)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5. 1. 9, 2019. 5. 9>

1. 용인시의 출연금
2. 주민지원기금 운용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제5조(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)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 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5. 1. 9, 2019. 5. 9>

제6조(주민지원기금의 용도)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1호의 용도로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70퍼센트 이상(단, 이동읍 주민지원협의체는 마을별 대표)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5. 1. 9, 2015. 12. 15, 2017. 12. 11>

1.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, 복지 증진, 육영사업 등을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업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.
2. ~ 6. 삭제 <2013. 12. 11>
7. 그 밖에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주민지원협의체 설치 등)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조성되는 주민 지원기금의 관리 ·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주민지원 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9. 5. 9>

- ②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기금 사무를 전담하게 할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9. 5. 9>
- ③ 사무요원의 인사, 보수기준, 복무 등은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에 따른다. <개정 2015. 1. 9, 2019. 5. 9>

제8조(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범위) ①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5. 1. 9, 2019. 5. 9>

1. 용인평온의 숲 입지 신청 시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, 실제 거주하여 온 사람
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그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2년간 되어있고, 실제 거주하여 온 사람

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교육, 질병치료,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원 대상지역을 벗어나 6개월 이내에 같은 지역으로 재 전입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5. 1. 9>

③ 삭제 <2015. 1. 9>

[제목개정 2015. 1. 9]

제9조(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주민지원기금은 시장이 관리·운용한다. <개정 2013. 12. 11>

②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용인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5. 1. 9, 2015. 12. 15, 2019. 5. 9, 2020. 11. 9>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지원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또는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5. 1. 9, 2019. 5. 9, 2021. 12. 31>

④ 삭제 <2015. 12. 15>

제10조(주민지원기금 관리공무원) ①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 <개정 2015. 1. 9>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9. 5. 9>

##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③ 기금운용관은 주민지원기금을 적정하게 운용·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5. 1. 9>

1. 기금관리대장(별지 제1호서식)
2. 기금지급대장(별지 제2호서식)
3. 현금출납부(별지 제3호서식)

제11조(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5. 1. 9, 2019. 5. 9>

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인 주민지원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5. 1. 9, 2019. 5. 9>

1. 주민지원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
3. 그 밖에 주민지원기금 결산에 필요한 서류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과 주민지원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9. 5. 9>

[제목개정 2019. 5. 9]

제12조(주민지원기금의 보고 및 환수) ①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12. 11>

②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한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5. 1. 9, 2019. 5. 9>

③ 삭제 <2019. 5. 9>

제13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주민지원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

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9. 5. 9>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5. 1. 9, 2019. 5. 9>

1.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  2. 주민지원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  3.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하여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5. 1. 9, 2019. 5. 9>

[제목개정 2019. 5. 9]

제1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5. 1. 9>

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 실·국장이 된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5. 1. 9, 2017. 10. 2, 2019. 5. 9>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5. 1. 9, 2017. 12. 11, 2019. 5. 9>

1. 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
2. 이동읍장
3. 주민지원협의체 위원,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및 용인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5. 1. 9, 단서삭제 2019. 5. 9>

제15조 삭제 <2019. 5. 9>

제16조(위원회의 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9. 5. 9>

제16조의2 삭제 <2019. 5. 9>

제17조(간사 등)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, 간사는 시립장사시설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, 서기는 장사시설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관으로 한다. <개정 2013. 12. 11, 2015. 1. 9, 2019. 5. 9>

제18조 삭제 <2019. 5. 9>

제19조 삭제 <2019. 5. 9>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 5. 9>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를 인용한 조항은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.  
별표 생략.

부칙 <2013. 12. 11 조례 제133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1. 9 조례 제142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12. 15 조례 제153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0. 2 조례 제171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⑥⑩ 까지 생략

⑪ 「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다
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1부시장”으로 한다.

⑥② 부터 ⑧③ 까지 생략

부칙 <2017. 12. 11 조례 제1736호, 구 및 읍·면·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⑥ 「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이동면”을 “이동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이동면”을 각각 “이동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이동읍 : 이동읍 주민지원기금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이동면”을 “이동읍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제1호 중 “이동면장”을 “이동읍장”으로 한다.

⑦ 및 ⑧ 생략

부칙 <2019. 5. 9 조례 제1923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금명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본다.

제3조(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2020. 11. 9 조례 제2079호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⑧ 까지 생략

⑨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「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2조제1항”을 “「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제1항”으로 하고, “통합관리기금”을 “통합계정”으로 한다.

부칙 <2021. 12. 31 조례 제2246호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&lt;개정 2019. 5. 9&gt;

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

(제6조 관련)

구분	사업내용	세부내용
1. 소득 증대 사업	농업시설	○ 공동영농(공동영농기계·공동축산 포함), 농기구수리시설, 공동양식·양어장, 생산품 공동저장소, 공동가공공장, 농업용 저수지·농로·임도·농업용수로·농업용양수장·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
	상공업시설	○ 공용 창고, 공동 판매 등 공동 수익 창출 시설
2. 복지 증진 사업	복지시설	○ 노인회관, 마을회관, 공중목욕탕, 보안등, 어린이놀이터, 버스승차 대기장 등
	도로시설	○ 소규모 도로 등
	상하수도시설	○ 상수도시설, 하수도시설 등
	교육·문화시설	○ 도서관, 유치원, 통학차, 문화시설, 향토박물관, 사적시설, 사회교육시설 등
	체육시설	○ 운동장, 야영장, 운동기구 등
	전기·통신시설	○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, 텔레비전 방송 공동 수신시설 등
	주거환경개선	○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(도시가스, 냉·난방시설 설치사업 포함) 등
3. 육영 사업		○ 컴퓨터·피아노 등 교육 기자재 지원,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, 장학기금 적립, 학교 급식지원 등
4. 그 밖의 사업		○ 그 밖에 소득증대, 복지증진, 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하는 공동사업 ○ 마을 발전기금(마을 공동자금 등) ○ 그 밖에 마을 총회에서 결의하여 추진하는 공동사업

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5. 1. 9>

**기금관리대장**(제10조제3항 관련)

(단위 : 원)

연월일	예 금				인 출 (또는 예금해지)		잔 액	비 고
	예금 종류	금 액	이 율	예금 기관	적 요	금 액		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5. 1. 9>

**기금지급대장**(제10조제3항 관련)

(단위 : 원)

연 월 일	적 요	수령자	지급액	잔 액	비 고

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5. 1. 9>

**현금출납부**(제10조제3항 관련)

(단위 : 원)

연 월 일	적 요	수 입	지 출	잔 액	비 고

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9. 5. 9>

#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서(정산서) (제12조제1항 관련)

사업명				
총 사업비				
사업기간				
사업개요				
구분	사업내역 (세부내역 별첨)	소요사업비		비고
계		계	기금 지원액	자부담
집행예정액 (집행액)				
집행잔액				

「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서(정산서)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- ### ○ 붙임 : 사업제안서 1부

20 년 월 일

신청인(단체명) : (인)

용인시장귀하